

하이트진로음료(주) 공고 제 2024-09-005 호

## 보 상 계 획 공 고

하이트진로음료(주)에서 시행하는 『하이트진로음료 진입도로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시행자 : 하이트진로음료(주)
2. 사업명칭 : 하이트진로음료 진입도로 공사
3. 사업위치 :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금거리 105-1 ~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내암리 19-9 일원
4. 보상내역 : 토지 38필지 14,410㎡ 및 지장물 등 일체

구분	소재지
보상대상	<p>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금거리 [편입(당초)]            105-1, 106-4(106-1), 117-3(117-1), 139-2, 139-14(139-7), 164-10, 164-14, 164-27(164-2), 164-7, 281-64(281-1), 281-66(281-1), 281-67(281-38), 281-68(281-39), 288, 289-2(289), 289-4(289), 293-1(293)</p> <p>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내암리 [편입(당초)]            19-9(19-3), 19-10(19-4), 19-11(19-5), 39-2(39-1), 44-2(44), 44-1, 47-1, 60-3, 62-6(62-3), 62-7(62-4), 63-2(63-1), 64-2(64-1), 241, 242-1(242), 245-6(245), 245-7(245), 245-8(245), 245-11(245), 247-1(247), 247-2(247), 248</p> <p>위 38 필지 14,410㎡의 토지 위에 위치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p>

- ※ 토지 및 물건조서 : 열람 장소에서 비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
- ※ 경계구역 토지이동(지번분할)로 인하여 위 공익사업 면적 14,410㎡는 차후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할 예정임.

5.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4. 09. 23. ~ 2024. 10. 15.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이의신청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 및 우편 발송
6. 열람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로 33-6 (주) 세종토지보상  
 홈페이지 : <http://www.sejongland1018.com/>  
 ☎ 044)415-1849, 010-3444-1845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금거내암로 308  
 -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

### 7. 보상시기

2024년 12월경부터 보상 협의 예정이며,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은 추후 개별 통지할 예정

### 8. 보상 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따라 3인(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을 보상가격으로 결정하여 협의합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14일 이상)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신청(협의 불성립 시)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날인	전화번호	감정평가업자
			주소	성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 9. 기타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개별 통지하고, 폐문부재 및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 보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상사무소(☎ 044-415-1849, 010-3444-184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토지 및 물건조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은 동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9. 23.

하 이 트 진 로 음 료 (주)

대 표 이 사 박 재 범

